

순창을 더+ 새롭게
군민을 더+ 행복하게

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629 호 2026. 7. 30.

훈 령

- 순창군 훈령 제666호 순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규정 1

고 시

- 순창군 고시 제2026-144호 공공하수도(하수관거) 설치인가 고시 5
- 순창군 고시 제2026-145호 순창읍 신남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6
- 순창군 고시 제2026-14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7
- 순창군 고시 제2026-152호 순창군 노동 장덕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9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 행 : 순창군 (편집 기획예산실)

순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6년 7월 30일

순 창 군 수

순창군 훈령 제666호

순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

순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기관경고·훈계”를 “기관경고·훈계·주의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”를 “경고와 훈계는 동일한
효력을 갖고, 주의는 훈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교육이수) ① 군수는 근무 경력 5년 이하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3조
제4호에 따른 “경고 등 처분”을 교육이수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

복무 조사 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지적된 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 공무원 등은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합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이버교육을 업무시간 외에 이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 이수시간은 혼계를 갈음하는 교육은 15시간 이상으로 하고, 주의를 갈음하는 교육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③ 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감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이수 확인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,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“경고 등 처분” 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를 제18조로 하며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정상참작)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처분대상자의 행위발생의 동기·근무 성적·공적사항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“경고 등 처분”이라 함은 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순창군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<u>기관경고·훈계</u>(이하 “경고 등”이라 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. 제14조(처분대상과 종류) ① (생략)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,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,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, <u>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</u> <u><신설></u>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<u>기관경고·훈계·주의</u> -----. 제14조(처분대상과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,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,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, <u>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, 주의는 훈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</u> <u>제14조의2(교육이수) ① 군수는 근무 경력 5년 이하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3조 제4호에 따른 “경고 등 처분”을 교육이수로 대체하여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복무 조사 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지적된 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대상 공무원 등은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합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이버교육을 업무시간 외에 이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이수 시간은 훈계를 갈음하는 교육은 15시간 이상으로 하고, 주의를 갈음하는 교육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.</u> <u>③ 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은 감사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<u>제17조 ~ 제19조</u> (생략)	<u>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이수 확인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,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“경고 등 처분”을 하여야 한다.</u> <u>제17조(정상참작)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처분대상자의 행위발생의 동기·근무성적·공적사항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</u> <u>제18조 ~ 제20조</u> (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)

순창군 고시 제2026-144호

공공하수도(하수관거) 설치인가 고시

순창군 인계면, 적성면 일원에 추진하는 “지북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하수도법」 제11조 제3항 및 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 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.

순 창 군 수

2026년 7월 30일

1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가. 주 소 :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

나. 성 명 : 순창군수

2. 사업 목적 :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
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

○ 위치 : 순창군 인계면, 적성면 일원

○ 하수처리구역 : 0.9182km²

4.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.명칭 및 용량

○ 관로매설 22.4km / 배수설비 369가구 등

5. 예정 하수처리구역 : 순창처리구역

※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: 순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(2017. 6., 순창군) 반영

6. 사업시행기간 : 2026. 7. ~ 2029. 7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.건물의 조서,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: 해당 없음

8. 기타 관계서류는 순창군 상하수도과(063-650-1491)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순창군 고시 제2026-145호

순창읍 신남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제1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『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』 제9조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31일

순 창 군 수

1. 사업의 목적	개간사업(밭작물 재배)	
2. 사업의 위치	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산42-23번지	
3. 사업시행자	성 명	박 * *
	주 소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000길 00
4. 지적/시행면적	11,847m ² / 3,760m ²	
5. 사업소요비용	12,280,000원	
6. 사업기간	2025. 2. 3. ~ 2026. 6. 18.	
7. 사업효과	농가소득 창출	
8. 이의신청	순창군청(경제산업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☎063-650-1836)	

순창군 고시 제2026-14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7. 27.

순 창 군 수 (인)

○ 도로명주소 폐지 : 4건

구분	관할읍면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(도로명+건물번호)	건물번호		비고
				폐지일	사유	
		“붙임	참조”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1층 민원과(☎650-1441)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(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- 폐지된 도로명·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[붙임]

○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구분	관할읍면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(도로명+건물번호)	건물번호		비고
				폐지일	사유	
1	팔덕면	용산리 613, 614	강천로 417	2026.7.27.	건축멸실 확인	
2	팔덕면	청계리 733-1	강천로 478	2026.7.27.	건축멸실 확인	
3	팔덕면	청계리 823-1	강천로 823-1	2026.7.27.	건축멸실 확인	
4	팔덕면	청계리 810	광덕로 619-13	2026.7.27.	건축멸실 확인	

순창군 고시 제2026-152호

순창군 노동·장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

순창군 노동·장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을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 합니다.

2026. 07. 30.

순 창 군 수

1. 사 업 명 : 순창군 노동·장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

2. 사업목적

- 노동·장덕지구 내 악취 및 환경오염 유발시설 철거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
- 재생사업을 통한 신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회복
- 순창읍 북부권역 도시개발사업 및 농촌특화지구와의 연계 발전 도모

3. 사업개요

- 위 치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노동마을, 순창읍 장덕마을
- 면 적 : 정비지구 면적 2.52km²(노동리·장덕리)
 - 정비대상시설 전체 부지면적 58,952m²
 - 행정리 2개, 실거주 인구 157명(노동마을 31명, 장덕마을 126명)
- 사업기간 : 2024 ~ 2028년(5개년)

○ 총사업비 : 18,000백만원(국비 9,000, 도비 2,700, 군비 6,300)

○ 사업내용 :

정비사업	① 취락시설 정비 5개소(돈사1, 퇴비공장1, 계사2, 우사1)
	② 공공임대주택 조성(13,261㎡, 총 12호)
재생사업	③ 생태복원 및 주민쉼터(45,691㎡, 토양정화 및 주민쉼터)
	④ 마을경관개선(마을회관 및 모정 리모델링·정비)
역량강화	⑤ 주민위원회 운영지원, 공동체 소통활동, 마을정주환경 보전활동

4. 효 과 : 생태환경 복원 및 재생사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신규 인구 유입 유도

5. 시 행 자 : 순창군수(대행기관: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)

※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촌활력과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가능 (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☎ 063-650-1774)